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0
----------	------------

제출일자 : 2009. 1. 1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매월 2,000,000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2,420,000원의 월정수당"으로 변경(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련법령 : 붙임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00,000원"을 "2,42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월정수당)위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00,000원의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4조(월정수당)----- 2,420,000원----- ----- -----.</p>

【붙임 2】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일부개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 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의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⑨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⑩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관련)

구 분 \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연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2008.2.29, 일부개정]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문개정]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2. 10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 13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9. 1. 20

다.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9. 2. 10)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박종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위원의 “매월 200만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242만원의 월정수당”으로 변경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전광역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 11. 28일 결정·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제4조의 월정수당을 “매월 200만원”에서 “매월 242만원으로 변경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교육위원에게 지급해 오던 의정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비는 종전대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고, 여비 지급 기준도 현행과 같으나, 월정수당은 매월 200만원에서 242만원으로 21%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의정비는 전년도 4,200만원보다 12%인 504만원이 증액된 4,704만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금액인 5,197만원의 90.5%수준의 금액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의정비의 재원이 시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위원의 2009년도 의정비 인상은 16개 시·도중 4개 시·도에서만 최소한의 금액을 인상했음을 볼 때, 교육감이 제출한 4,704만원의 교육위원 의정비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